

N
National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Report 202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Pension

F
Fund

CONTENTS

기금이사 인사말	3
I.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의 이해	
1. 책임투자의 정의	4
2. 책임투자 추진 근거	5
3. 책임투자 정책	6
4. 책임투자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7
5. 책임투자 활동 연혁	11
II.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이행	
1. ESG 통합전략(ESG Integration)	13
2. 투자제한(Negative Screening)	17
3. 의결권 행사	18
4. 주주활동	20
III. 책임투자 관련 국제 협의체 활동	
IV. 향후 계획	
1. 해외주식 기업과의 대화 도입방안 마련	27
2. 투자제한 전략 단계적 시행방안 지원	27
3. 소송 제기	27
4. 주주권 행사 역량 강화 및 절차 등 개선 검토	27
V. 주주활동 통계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28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29
3. 주주활동 수행 내역	29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서원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된 기금운용 전문조직입니다. 출범 당시 적립금 47조 원, 6팀으로 시작한 기금운용 본부는 기금 규모의 성장과 투자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에 2023년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035.8조 원이며, 3부문, 13실, 1단, 3개의 해외 사무소를 갖춘 글로벌 기금운용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기업실적 악화, 신용 및 유동성 충격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다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인 14.1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9년 11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환경 및 사회 관련 중점 관리사안을 신설하고, 해외주식·해외채권 직접운용에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책임투자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주주권 행사 또한 관련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기금의 책임 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금운용 수익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의 이해

1. 책임투자의 정의
2. 책임투자 추진 근거
3. 책임투자 정책
4. 책임투자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5. 책임투자 활동 연혁

1. 책임투자의 정의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하며,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는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ESG Incorporation)와 투자대상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건설적 대화 등을 통해 ESG 관련 위험관리능력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주주권 행사(Stewardship)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책임투자 방식은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CFA Institute와 공동으로 정의한 다섯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위험조정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통합(ESG Integration), 특정 ESG 트렌드와 관련된 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테마 투자(Thematic Investing), 재무적 수익 창출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투자대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투자대상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수탁받은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로서 주어지는 권리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 행사(Stewardship)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이행 현황

구분 ¹⁾	정의	이행 여부	내용
ESG 투자 (ESG Incorporation)	스크리닝 (Screening)	이행 예정	기금운용위원회의 탈석탄 선언에 따른 단계적 투자 제한 이행방안 마련 추진
	ESG 통합 (ESG Integration)	이행	주식·채권(회사채 등) 운용 시 ESG 등급 고려 등
	테마 투자 (Thematic Investing)	미이행	-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미이행	-
주주권 행사 (Stewardship)	수탁받은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로서 주어지는 권리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행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국내주식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수행 등

1) '23.11월 PRI, GSIA, CFA Institute에서 공동 발표한 "Definition for Responsible Investment Approaches"에 따른 분류와 정의

2. 책임투자 추진 근거

2015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반영해 2016년 4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도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및 관련 지침 제·개정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종전보다 넓은 범위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의 기금운용 5대 원칙(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에 지속가능성이 추가되어 책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추진 근거

국민연금법
제102조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3. 책임투자 정책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금은 「책임투자 원칙」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며, 주주권 행사 과정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책임투자 관련 정책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p>제17조(책임투자)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p> <p>제17조의2(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p> <p>제17조의3(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p>	
책임투자 원칙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1) 장기적·안정적인 수익 증대 목적 (원칙2)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행 (원칙3) 주식, 채권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 이행 (원칙4) 투자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원칙5)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이행 (원칙6)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시 책임투자 고려 (원칙7)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공시 개선 유도 (원칙8) 책임투자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원칙9) 책임투자 활동 주기적 보고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원칙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사유 공개 (원칙6)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원칙7) 수탁자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제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p>제1편(총칙):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의사결정 주제</p> <p>제2편(책임투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방식</p> <p>제3편(주주권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행사(대상, 기본원칙, 세부기준 등) -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비공개대화, 비공개·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주주제안 등) -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대상, 준용기준) - 소송 제기(제소의 결정, 소송 의뢰,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준용규정 등) <p>제4편(공시 및 제출 등): 통보 및 공개, 공시 및 제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내부통제, 기록보관, 역량강화 등</p> <p>별표: 국내주식·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양식, 중점관리사안 선정기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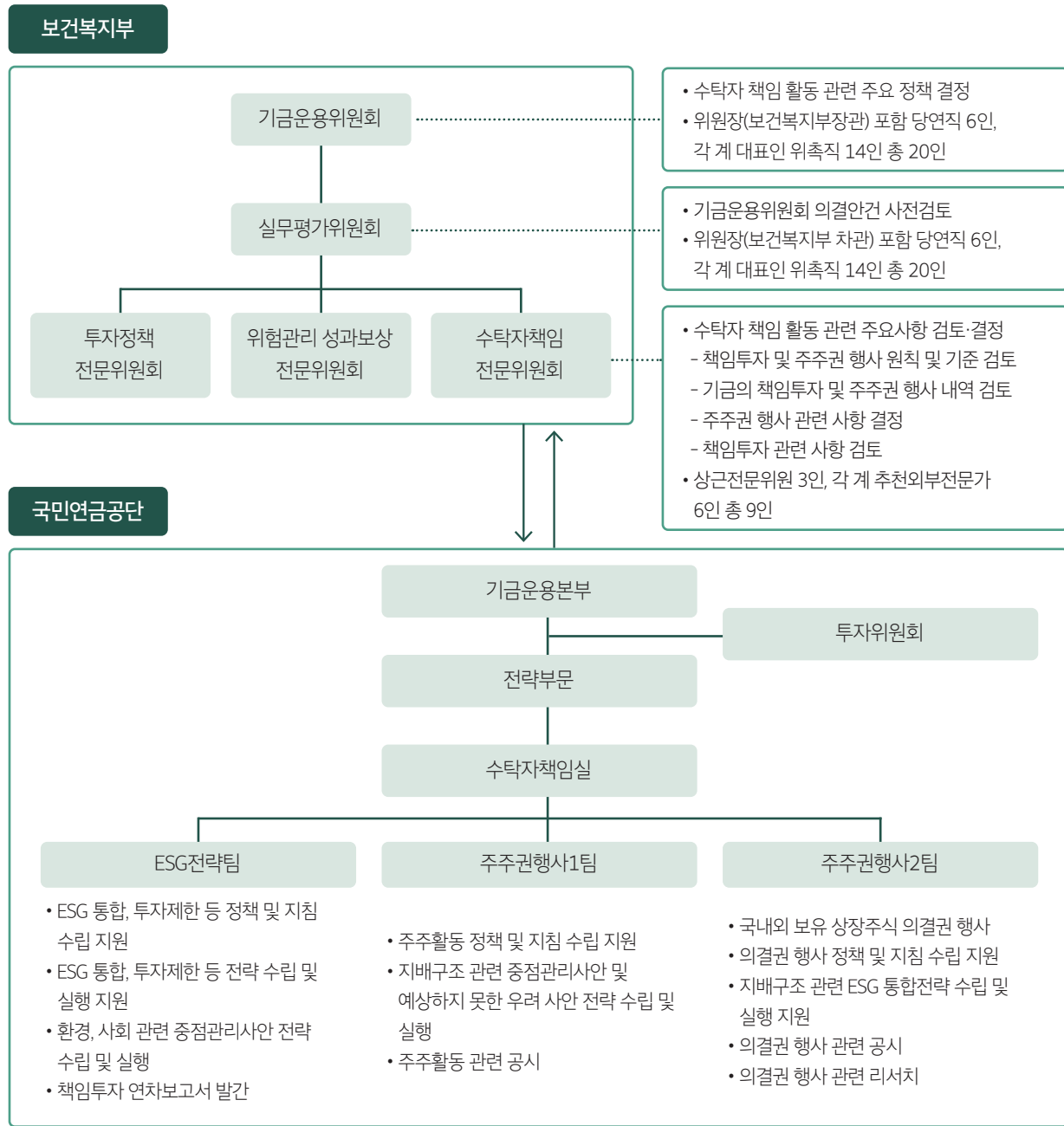
4. 책임투자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국민연금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책임투자 활동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금의 ESG 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합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내 기금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투자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이행은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 내 수탁자책임실과 각 자산군별 운용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수탁자책임실의 인력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초 수탁자책임실 내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책임투자팀은 ESG전략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주권행사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하여 ESG전략 이행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SG전략팀은 ESG 통합, 투자제한 등 정책 및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ESG통합, 투자제한 등 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역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고유의 ESG 평가 및 관련 리서치 업무, 환경·사회 관련 주주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권행사1팀은 주주활동 정책 및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지배구조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지배구조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주주활동 관련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권행사2팀은 의결권 행사 정책 및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관련 리서치를 수행하며,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책임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 및 조직 (2024년 1월 기준)



◆ 2023년도 책임투자 활동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내역

차수	일자	안건명
1	3.7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소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및 개정 의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	5.31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

◆ 2023년도 책임투자 활동 관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내역

차수	일자	안건명
1	1.17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중대성평가 대상기업 선정(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2	3.13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적극적 주주 활동 추진여부 등 검토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해외증권 책임투자 적용방안(재보고)
		'23.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현황보고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사례보고 후속 논의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 대화 중간보고
		배당정책 수립 관련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배당정책 수립 관련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3	3.16	삼성SDI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삼성전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대화대상기업 개선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POSCO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메리츠증권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삼성중공업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NAVER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신한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BNK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롯데칠성음료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현대홈쇼핑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4	3.23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KB금융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케이씨씨글라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KT&G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팬오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1. 책임투자의 정의
2. 책임투자 추진 근거
3. 책임투자 정책
4. 책임투자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5. 책임투자 활동 연혁

차수	일자	안전명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에이치엘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에이치엘만도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하이트진로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SK텔레콤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재심의)
5	3.28	DG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남선알미늄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넷마블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원익QnC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6	3.30	'22년 제2차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ESG 정기평가 결과 보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추진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내역 및 의결권위임 정기점검 결과보고 케이티 정기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7	5.3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방안(안) 배당정책 수립 관련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개선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법령상 위반우려 관련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개선여부 판단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중대성평가 대상기업 선정(안)
8	5.1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보고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개선여부 판단 및 적극적 주주활동 추진여부 등 검토(안)
9	7.11	국민연금기금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및 의결권 위임 정기점검 결과 보고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개선 여부 판단 및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안)
10	8.16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보고서 보고
11	8.25	KT 임시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안(안) 배당정책 수립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12	9.22	지속적 반대 의결권행사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
13	10.26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2023년 2분기)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안)(2023년 3분기)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중대성 평가 대상기업 선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재보고)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사례 보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추진 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및 의결권 위임 정기점검 결과 보고(2023년 2분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및 의결권 위임 정기점검 결과 보고(2023년 3분기)

차수	일자	안전명
14	11.15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안)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보고
15	12.19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사례 보고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안) 발제의 건

5. 책임투자 활동 연혁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 9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09년 6월에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고, 2013년 3월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을 신설하여 국내외 주식운용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의결권 행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책임투자 활동의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주식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에는 운용역에게 ESG 정보를 제공하는 ESG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역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책임투자 적용자산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주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국내주식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국내주식 직접운용 자산에 확대·강화된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였으며, 2021년 5월에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면서 이와 함께 탈석탄(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국내채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내채권(회사채 등)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의결권 행사 등 기금의 주요 책임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해외주식의결권 행사대상을 확대(보유비중 0.5% 이상→0.3% 이상) 하였고 3월에는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시 전자투표 활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인 IFRS Sustainability Alliance(舊 SASB Alliance)에 가입하였으며, 거래증권사 선정시 책임투자보고서 발간 여부를 포함하면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산업안전 관련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에 추가하여대상기업 중 해당사안 관련 위험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비공개대화, 주주제안 등) 실시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기관의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중 책임투자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하고, 증권사의 ESG 경영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입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해외주식·채권 직접운용 ESG 통합 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증권에 대해서도 책임투자 전략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12월에는 기금운용본부 내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기금이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연혁

2006 ~ 2015

2006 9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	2009 6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 12월 의결권 행사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	2013 3월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 신설	2015 6월 국내주식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추진 방안 마련 11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를 위한 신규 책임투자형 벤치마크 도입 12월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구축
-----------------------------------	--	--------------------------------------	---

2016 ~ 2019

2016 4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 12월 국내주식 ESG시스템 구축	2018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권 행사 지침」을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	2019 1월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 (1실 2팀 - 책임투자팀, 주주권 행사팀)로 확대·개편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2월 의결권 행사 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9월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가입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가입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기금운용지침의 기금운용 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 신설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등 가점 부여방안 마련 12월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	--	--

2020 ~ 2023

2020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개정 9월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중대성 평가절차 및 중대성 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11월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AIGCC(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가입	2021 5월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 6월 국내채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공개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 운용사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요소 고려 방안 마련	2022 2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해외주식 의결권 대상 확대 3월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전자 투표 시행 6월 IFRS Sustainability Alliance(舊 SASB Alliance) 가입 거래증권사 선정시 책임투자보고서 발간 여부 포함	2023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환경 및 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에 책임투자 항목 관련 배점 확대 4월 해외주식·채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 신설
--	---	---	--

II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이행

1. ESG 통합전략(ESG Integration)
2. 투자제한(Negative Screening)
3. 의결권 행사
4. 주주활동

1. ESG 통합전략(ESG Integration)

기금은 장기간에 걸쳐 ESG 통합전략 이행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기금은 2015년 12월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ESG 관련 내부 리서치 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ESG 통합전략 도입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주식 직접운용 및 국내채권(회사채 등) 직접운용에 적용 중이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의결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ESG 통합전략 적용 대상 자산군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용의 경우 기금의 ESG 통합전략은 ESG 평가를 바탕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업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회사채 등) 직접운용 시 운용역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ESG 통합전략을 이행합니다. 위탁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직접운용

(1) 국내주식·채권 ESG 통합전략

기금은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상장주식(KOSPI+KOSDAQ150) 및 그 외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KOSDAQ 상장기업, 회사채 및 회사채가 아닌 주권상장법인 채권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ESG 평가체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14개 항목의 6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해 산업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ESG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지표

	항목(14)	평가지표(61)
환경 (E)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에너지 사용량 평가
	환경영향 관리	환경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환경경영 목표 설정, 청정생산 관리 활동, 용수 사용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화학물질 배출량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급여, 인적자원 투자, 고용, 가족친화문화(출산·보육), 근속연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안전	안전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사회 (S)	공정거래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 활동, 하도급법 위반 사례,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제품안전과 소비자 보호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소비자중심경영 외부 인증, 소비자 고충처리 채널 운영,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사고 발생
	정보보호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외부 인증, 정보보안 유출 사고

항목(14)	평가지표(61)
주주권리향상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정기주주총회 공시시기,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이사회 구성과 운영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사회의 활동,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지배 구조 (G)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ESG 위원회 설치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관계사위험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내부통제와 준법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시스템, 준법경영시스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위반 여부

기금은 2020년 하반기에 수행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1년 중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내채권에 대한 ESG 평가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환경오염, 산업안전, 계열사 부당거래 등 ESG 컨트러버설 이슈 발생한 내역이 전체 평가대상 기업의 ESG 점수 및 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ESG 평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충실한 평가와 지침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추가(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삭제(장기재직 감사(위원)비중), 변경(인권 →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노동관행 → 노사문화 우수기업)하였으며, 배점방식을 일관성 있게 변경하는 등 ESG 평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금은 향후에도 KSSB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ESG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것입니다.

기금은 2023년 말 기준 국내 상장기업 960개 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으며, ESG 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산출한 등급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도 ESG 평가 결과(주식)

AA등급	A등급	B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합계
105 (10.9%)	186 (19.4%)	178 (18.5%)	348 (36.3%)	137 (14.3%)	6 (0.6%)	9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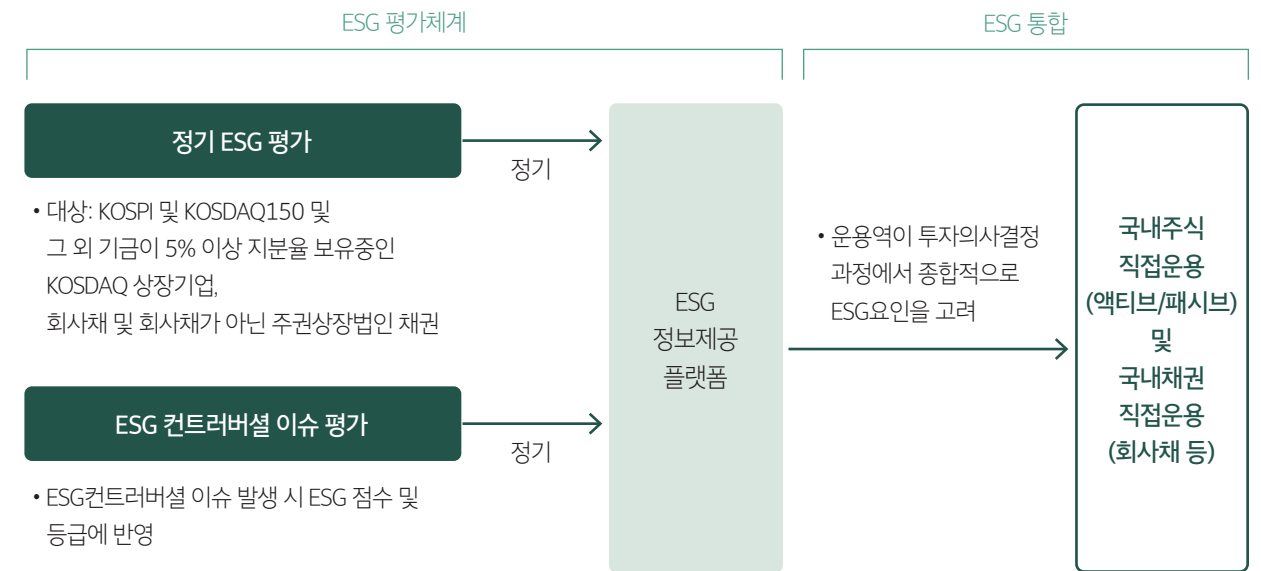
또한, 국내 상장기업, 회사채 및 회사채가 아닌 주권상장법인 1,047개 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고, 해당 ESG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6개 등급을 산출한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도 ESG 평가 결과(채권)

AA등급	A등급	B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합계
128 (12.2%)	201 (19.2%)	202 (19.3%)	365 (34.9%)	141 (13.5%)	10 (1.0%)	1,047 (100.0%)

ESG 평가결과를 포함한 ESG 정보는 ESG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금 내의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직접운용 운용역에게 제공되며 투자이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인 정보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 ESG 평가 및 직접운용 ESG 통합 프로세스



기금은 2017년부터 국내주식 직접운용자산 중 일부(액티브형)에 대해 ESG 통합전략을 적용해 왔습니다. 2020년 11월 기금은 ESG 통합전략을 패시브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강화된 이행 방안을 담은 「국내주식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국내주식 직접운용 자산 전체에 대하여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기금은 국내채권 직접운용 자산(회사채 등)에도 ESG 통합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직접운용 운용역은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검토시 ESG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하위등급에 해당할 경우 검토보고서에 운용역 의견 및 ESG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능종목군 점검시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여부¹⁾를 확인하여, 초과 편입 유지 시 사유와 투자의견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채권 직접운용(회사채 등) 운용역은 투자가능종목군에 종목 편입을 검토하거나 신규 발행종목에 투자할 때 해당 발행기관이 하위등급에 해당할 경우 ESG 세부내용 확인 및 상세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D등급은 원칙적으로 초과편입 금지('21년 국내주식 직접운용 액티브, '22년 국내주식 직접운용 패시브 적용)

(2) 해외주식·채권 ESG통합전략

기금은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책임투자 이행에 활용할 외부 ESG 평가기관을 2023년 12월 선정하여 해외기업별 ESG 점수 및 등급, 컨트러버셜 이슈 관련 정보 등 ESG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4월에는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에 책임투자 적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액티브 직접운용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 시 ESG 정보를 고려하고, 해외주식 패시브 직접운용은 투자가능종목군 점검 및 매매 실행 시 ESG 정보를 고려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채권 회사채 직접운용은 매매 실행 시 발행기관의 ESG 정보를 고려하고, 포트폴리오 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에 대해 반기별로 ESG 세부 내역을 점검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운용상 여건을 고려하여 자산군별 특성 및 운용 유형에 부합하는 ESG 통합전략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적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위탁운용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서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는 기금이 책임투자 위탁펀드 유형의 특색을 반영하여 개발한 벤치마크인 'NPS-FnGuide 책임투자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선정 시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용 매니저의 책임투자 관련 전문성 및 도덕성, 책임투자 전략 및 프로세스, 책임투자형의 투자지침 준수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는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사가 책임투자 관련 운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기존 국내주식 책임투자 유형 위탁운용사 뿐 아니라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전체에 책임투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내채권,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시 부여하는 책임투자 관련 가점을 확대하여 위탁운용의 책임투자를 내실화하였습니다.

◆ 연도별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단위 : 조원)

자산군		2021	2022	2023
국내주식	직접운용	84.3	62.0	72.6
	위탁운용	7.7*	63.4	75.4
국내채권	직접운용 (회사채 등)	38.2	37.7	34.7
	위탁운용	-	45.6	48.3
해외주식	직접운용	-	-	138.5
	위탁운용	-	142.6	181.6
해외채권	위탁운용	-	32.8	36.1
책임투자 적용 규모		130.2 (13.7%)	384.1 (43.2%)	587.2 (56.7%)
금융투자 부문 합		948.1	899.8	1,035.2

* '21년은 국내주식 위탁펀드 중 책임투자형 위탁펀드만 적용 자산군에 해당

※ 운용규모는 책임투자 관련 전략 및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군의 규모

2. 투자제한(Negative Screening)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시, 투자제한 전략에 대해서 도입의 필요성, 적용대상 및 방식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기후변화 분야에 우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선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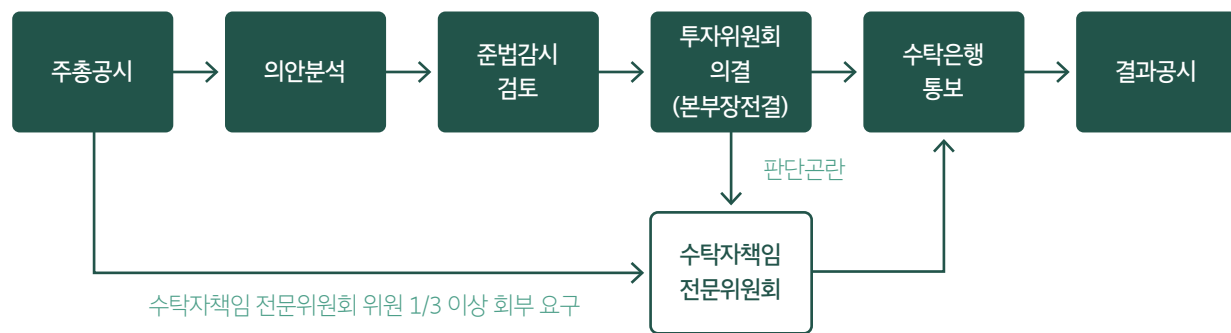
2021년 12월부터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대상 산업의 범위 및 기준, 선정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2022년 4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전략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투자제한 대상 산업 범위 및 기준, 대상 기업 선정 방식, 자산별·지역별 이행시기 등이 포함된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1) 기준 및 절차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지침 등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의결권 행사 기준, 행사 절차,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사하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분석 외부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의결권 행사 절차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보유지분율과 보유비중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기금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기금 보유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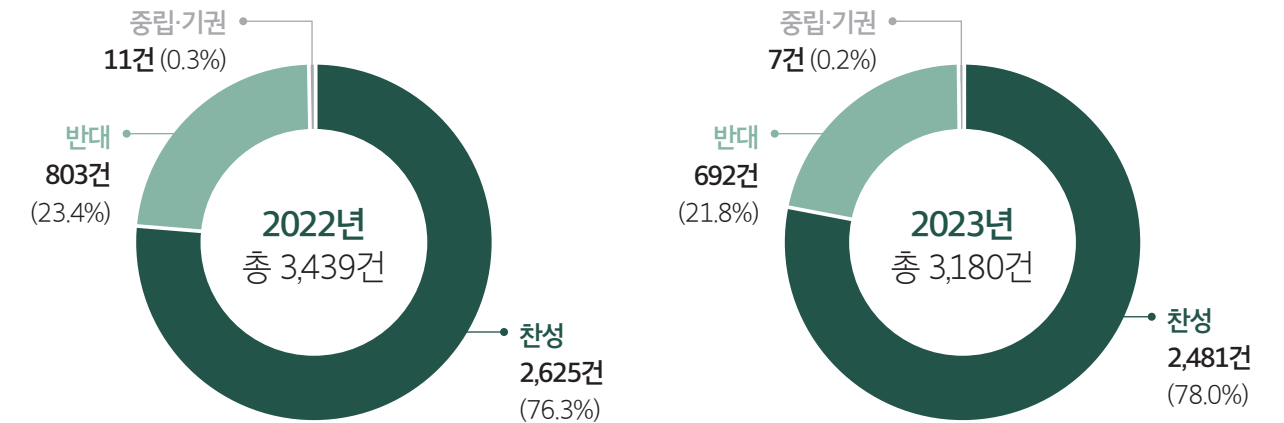
또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등 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기주주총회 시즌 전 상장사 대상 설명회, 위탁운용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2) 공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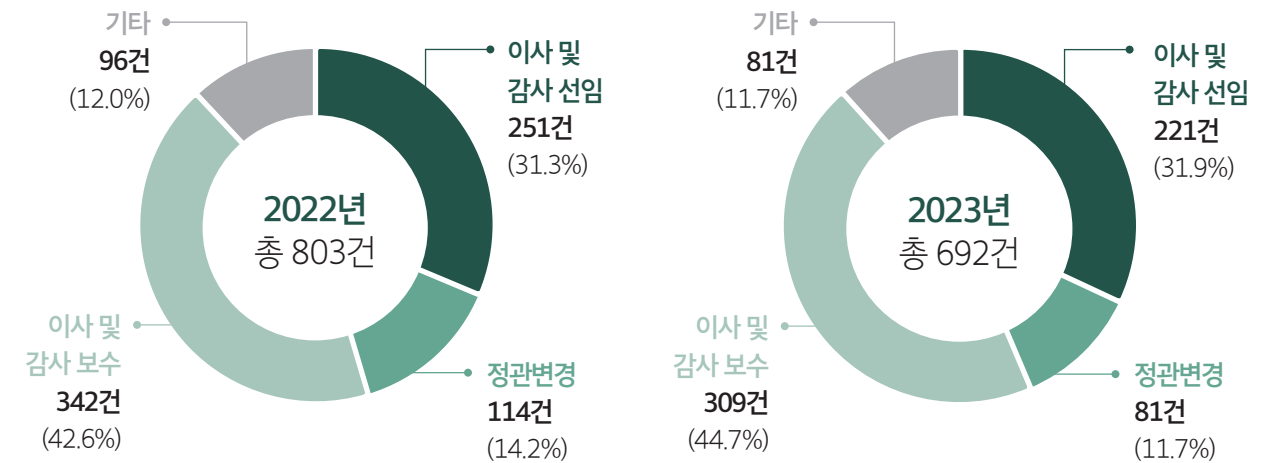
국민연금기금은 주주총회 개최 이후 14일 이내에 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지침상 근거조항을 포함한 세부 반대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보유한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안건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금은 2023년에 79건의 국내 주주총회 및 4건의 해외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전공개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에 국내 보유주식의 79회 주주총회에서 총 3,180건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의결권 행사 현황



◆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 2023년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사례

① 재무제표 승인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수준이 미흡한 A기업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하여, 회사가 공시한 주주환원정책,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B기업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하여, 회사가 공시한 배당정책과 손상 차손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였습니다.

한편, 이사회 제안과 주주제안이 결합한 C기업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 보유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제안에 찬성하였습니다.

②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기금은 당해회사를 포함하여 14개 사에서 겸직 중인 사내이사(D기업), 당해 회사가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외이사(F기업), 주주총회일 이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확인 가능한 전직 공직자인 사외이사(F기업), 회사와 주요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재직했던 상근 임직원(G기업), 회사가 의뢰한 설계 프로젝트 및 자문을 총괄 및 담당할 대학교 교수인 사외이사(H기업) 후보에 대하여 반대 결정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위행위로 제재를 받은 법인의 사내이사(J기업),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법인의 사내이사(K기업)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로 반대 결정하였고, 금융상품 불안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L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및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당시 감사 의무를 소홀히 한 자로 보아 반대 결정하였습니다.

③ 정관 변경

국민연금기금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총회 일반결의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M기업),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N기업)에 반대 결정하였습니다.

④ 이사보수한도 승인

국민연금기금은 보상 수준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수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수준이 과다하나, 이러한 한도 설정에 대하여 회사측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O기업)에 반대하였으며, 회사가 소명한 사내이사 추가 선임 필요성, 계획 및 예상 비용 등 합리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P기업)에는 보수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수준이 과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찬성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금액과 경영성과가 연계되지 않았으며, 미연계 사유에 대하여 회사측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Q기업)에 반대하였으며, 회사가 소명한 중단 사업 손실 등 합리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R기업)에는 경영성과와 보수금액이 연계된 것으로 보아 찬성 결정하였습니다.

해외 보유주식의 경우, 2023년 총 62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577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찬성 418건(72.44%), 반대 159건(27.56%), 중립/기권 0건(0.00%)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주주활동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의결권 행사 및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등에 머물던 주주권 행사의 범위가 임원보수, 법령상 위반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²⁾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시행하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한진칼에 대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결의³⁾(19.2월) 하였습니다. 이후 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임원 선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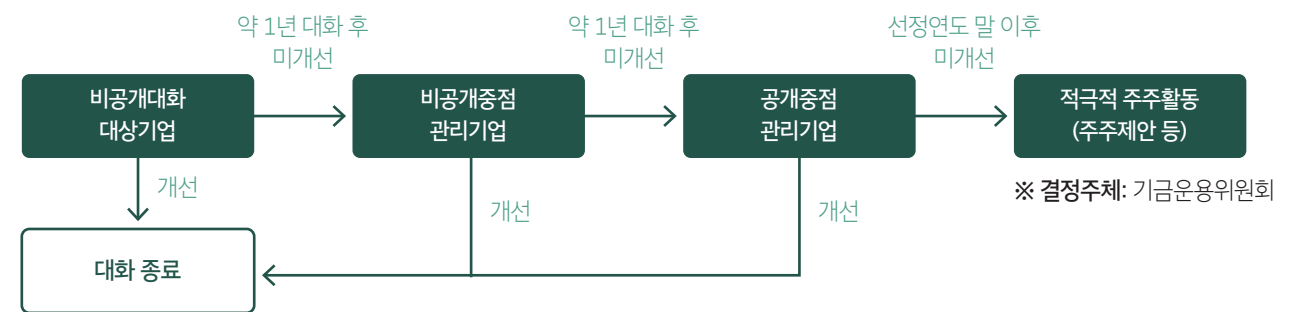
3) 2019년 3월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금의 주주제안은 최종 부결(찬성: 48.66%, 반대 등: 51.34%)되었습니다.

1)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⁴⁾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비공개대상기업 선정,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



※ 대상기업 선정 및 개선여부 판단주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기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보수금액, 기업의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① 당해 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행위 ②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 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경영진의 사익편취)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안건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기후변화 관련 사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 관련 ESG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산업안전 관련 사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중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관련 ESG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

4) 기금운용위원회 의결(2023.3.7.)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중점관리사안 가운데 'ESG 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을 삭제하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①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국민연금기금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은 배당정책 수립 관련, 33개 기업에 대하여 서한 발송 및 면담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상기업과 우호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배당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수준을 제시하기 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공개함에 따라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S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화 전 해당 기업은 공개한 배당정책이 모호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이었으나, 기금과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면담을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S기업은 투자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EBITDA-CAPEX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2030년까지 EBITDA-CAPEX 대비 현금배당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당정책의 공시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에 대한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 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CAPEX: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②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국민연금기금은 실제 지급한 보수금액 및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은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15개 기업에 대하여 서한 발송 및 면담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상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금은 주주총회의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고, 보수정책, 이사보수한도 산정 근거 등의 기업 측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이사보수한도 산정 근거인 보수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보상위원회에서 이사보수를 결정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임원보수한도 적정성과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절차와 취지, 이사보수한도와 실지급액 간 차이가 클 경우 이사보수한도 관련 주주총회 안건이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 경영성과와 사내이사 실지급액의 적절한 연계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사보수한도 관련 비공개대화의 취지와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고 그 결과, T기업은 영업이익, 사업 추진 성과, 상대적 주가상승률 등에 연계된 성과급 체계가 포함된 보수정책을 마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나아가, 동 정책에 따라 대표이사의 보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U기업은 장기성과급에 대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사내이사별 급여종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사내이사 보수 계획을 주주총회소집공고에 상세히 공개하여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③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국민연금기금은 검찰 기소, 공정위 의결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은 9개 기업과 서한 발송 및 면담 등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기업에 대해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기금은 경영진의 횡령 행위와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취지 및 절차, 해당 회사의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치사항,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고, 기업들은 법령 위반 관련 비공개대화의 취지와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실이 확인된 V기업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례적 경우에 대한 전사 차원의 손해회복 조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V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의 대외 공개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④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은 13개 기업과 서신 및 면담 등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기업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상 반대 사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조치 계획을 이행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기금의 주주활동 취지 및 절차,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관련 비공개대화의 취지 등에 깊이 공감하였고, 그 결과 기금이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한 W기업은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를 축소하였으며,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력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한 X기업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하여 리스크 발생으로 성과급 차감사유 발생 시 경영진 성과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환수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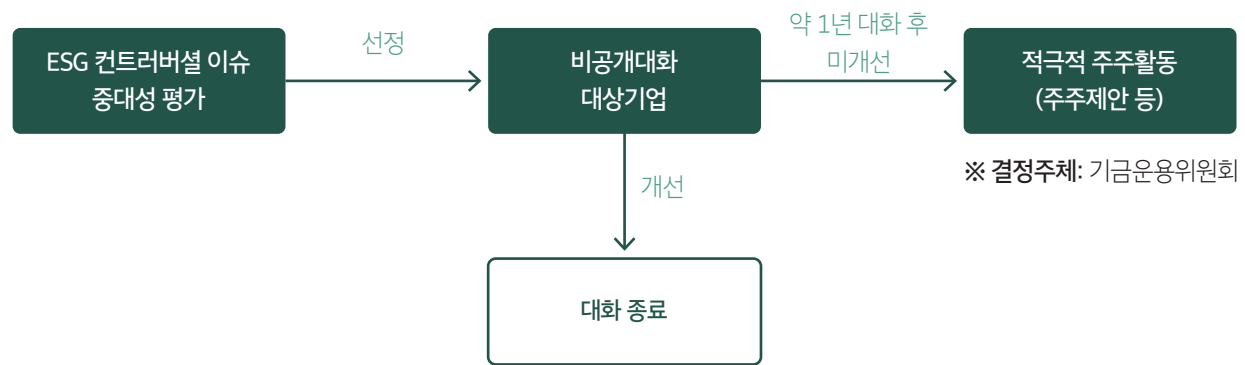
⑤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2023년 3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기금은 환경, 사회 요소를 중점관리사안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지배구조 중심의 주주활동 전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기업 선정 및 개선판단 기준 등 세부 절차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대상기업 선정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KSSB 공시기준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등을 주주활동 수행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

기금은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주주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ESG 컨트러버설 이슈⁵⁾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비공개 대화부터 주주제안 등에 이르기까지 주주활동을 추진합니다.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절차



※ 대상기업 선정 및 개선여부 판단주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에 ESG 관련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등 국가기관의 조사, 환경 법규 위반, 사업장 내 인명피해 발생 등 각종 ESG 컨트러버설 이슈에 대하여 59건의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4개 기업에 61건의 서신을 발송하고, 12건의 비공개 면담을 수행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상기업과 우호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등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Y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복구 조치 이행,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필요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작업 방식 및 장비를 개선하고, 경영진의 안전우선 경영원칙 수립으로 이사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전사 안전 관련 정책 강화, 안전 관련 지배구조 및 조직 강화, 안전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축, 안전 관련 인력 및 교육 확대, 정보 공개 확대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5) 컨트러버설 이슈: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사건 사고

3) 적극적 주주활동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2월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해당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금은 주주활동 요건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개선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하며, 예외적으로 개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적극적 주주활동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공개중점관리기업,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중 개선이 없는 기업
판단기준	•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안별 개선 판단기준, 해당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주주제안의 실효성, 비용효과성 및 시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선정방법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그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주주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 여부 및 추진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
주주제안 내용	•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절한 주주제안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

4) 소송제기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 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제기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III 책임투자 관련 국제 협의체 활동

국민연금기금은 2009년 6월 책임투자관련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의체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⁶⁾에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기금은 책임투자 현황에 대한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에 따라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하고 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기금은 기업지배구조 및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등과 관련된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력기구인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⁷⁾과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⁸⁾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기금은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아시아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저탄소 투자 관련 협의체인 AIGCC(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⁹⁾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정 활동 및 산업별 ESG 이슈 중대성 구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는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관련 협의체인 IFRS Sustainability Alliance(舊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Alliance)¹⁰⁾에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은 ICGN, ACGA, AIGCC 및 IFRS Sustainability Alliance가 제공하는 연구·조사자료,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ESG 관련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ESG 투자 및 주주권 행사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이 가입 및 활동 중인 글로벌 책임투자 협의체



6)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UNEP FI, UN Global Compact 및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정된 책임투자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관투자자가 투자활동 전반에 책임투자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6대 원칙을 명시(‘23.3월 기준 서명기관 5,391개, ‘21.3월 기준 총 운용규모 약 13경 7,494조원)

7)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협력기구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사와 연구, 네트워크를 제공(‘23년 기준 45개국 회원기관 800개 이상)

8)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금융 환경 생태계 개선을 위해 설립된 협력기구로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23년 기준 18개국 105개 회원)

9) AIGCC(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는 아시아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으며, 연구자료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 관련 투자활동 및 정책참여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23년 기준 연기금·자산운용사 및 유관기관 총 71개 회원)

10) IFRS Sustainability Alliance(舊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지속가능성의 재무적 영향과 관련하여 기업과 투자자 간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11년 설립된 비영리기관. 재무적으로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ESG정보 공개를 위한 산업별 공시기준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V 향후 계획

1. 해외주식 기업과의 대화 도입방안 마련
2. 투자제한 전략 단계적 시행방안 지원
3. 소송 제기
4. 주주권 행사 역량 강화 및 절차 등 개선 검토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월 공적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시장신뢰 확보 및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금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근거 및 기준을 경영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1. 해외주식 기업과의 대화 도입방안 마련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과의 대화 전략 적용 자산군을 해외주식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기금은 2021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제도, 기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해외증권 책임투자 적용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방안이 마련되면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투자제한 전략 단계적 시행방안 지원

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탈석탄 선언을 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석탄산업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이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행방안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3. 소송 제기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당시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대표소송 제기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금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승소가능성,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소송 제기 대상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주주권 행사 역량 강화 및 절차 등 개선 검토

2018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한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하여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였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관련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충실하게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고, 대외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과 국내 및 해외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에 국내 보유주식에 대해 799회의 주주총회에서 총 3,180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찬성 2,481건 (78.02%), 반대 692건(21.76%), 중립/기권 7건(0.22%)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총 692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 221건(31.9%), 정관 변경 81건(11.7%), 보수한도 승인 309건(44.7%), 기타 81건(11.7%)입니다.

① 의결권 행사 내역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 (비중)	반대 (비중)	중립/기권 (비중)
2023년	1,243	799	3,180	2,481 78.02%	692 21.76%	7 0.22%
2022년	1,143	825	3,439	2,625 76.33%	803 23.35%	11 0.32%
2021년	1,208	773	3,378	2,808 83.13%	549 16.25%	21 0.62%

② 안건별 반대 행사 내역

반대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이사 및 감사 선임	178	32.4	251	31.3	221	31.9
정관변경	85	15.5	114	14.2	81	11.7
이사 및 감사 보수	178	32.4	342	42.6	309	44.7
기타	108	19.7	96	12.0	81	11.7
합계	549	100.0	803	100.0	692	100.0

③ 이사 및 감사 세부 반대 사유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장기연임(10년이상)	22	12.4	10	4.0	16	7.2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45	25.3	71	28.3	43	19.5
이사회 참석률 저조(75% 미달)	15	8.4	13	5.2	41	18.6
과도한 겸임	31	17.4	33	13.1	26	11.8
감시의무소홀	19	10.7	25	10.0	16	7.2
기타	46	25.8	99	39.4	79	35.7
합계	178	100.0	251	100.0	221	100.0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에 해외 보유주식에 대해 62회의 주주총회에서 총 577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찬성 418건(72.44%), 반대 159건(27.56%), 중립/기권 0건(0.00%)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행사년도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 (비중)	반대 (비중)	중립/기권 (비중)
2023년	62	577	418 72.44%	159 27.56%	0 0.00%
2022년	46	376	265 70.48%	111 29.52%	0 0.00%

3. 주주활동 수행 내역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하여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을 추진하면서 비공개서한 발송, 비공개면담, 공개서한 발송 등 지침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사 착수 등이 인지되거나 ESG 컨트러버설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비공개 서한발송 및 면담 등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적설명, 주주총회 안건 설명 등 기업의 요청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에 172개 기업과 서한발송 및 비공개면담 등 주주활동을 297회 수행하였습니다.

◆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기업과의 대화 수행내역

구분	주제	기업수 ⁴⁾		서한발신 (비공개 및 공개)		비공개면담		소계 (서한발신 및 비공개면담)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중점 관리 사안	배당정책 수립	38	33	47	38	25	13	72	51
	임원 보수한도	13	15	13	14	23	25	36	39
	법령상 위반 우려	17	9	15	9	25	13	40	22
	지속 반대 의결권	11	13	12	14	23	17	35	31
	기후변화 ¹⁾	-	-	-	-	-	-	-	-
	산업안전 ²⁾	-	-	-	-	-	-	-	-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39	54	50	61	11	12	61	73
	기타 ³⁾	21	48	0	1	28	80	28	81
	합계	139	172	137	137	135	160	272	297

1) 2023.3.7. 신설

2) 2023.3.7. 신설

3) 기타(사실관계 확인 및 주총 의안설명 등)

4) 각 주제별 서한발신 및 비공개면담 수행 기업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는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기준 시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설명이 생략되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fund.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인쇄 2024년 8월 발행 2024년 8월 발행인 김태현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 책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생필프가 30% 함유되어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인스퍼에코 용지와 콩으로 만든 친환경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